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동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

발의연월일: 2023. 7. 5.

발의의원: 김동훈, 조성대, 김상수,

박경원, 이정애, 이진환,

한근수, 전혜연

1. 제안 이유

청년 농업인에게 기술·경영·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, 농가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다.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계획 및 사업 등 규정함. (안 제4조~제5조)
- 라. 관리·감독 및 지원제한 등 규정함. (안 제7조)
- 마.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바.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- 사.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0조)
- 아. 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조~제12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

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농업·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농업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 - 2. "청년농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(예정)한 사람
 - 나. 남양주시(이하 "시"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
- 제3조(책무) ①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.
 -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 및 제조, 가공, 유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)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

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- 1.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
- 2.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
- 3.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- 4.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
- 5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)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
 - 2.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
 - 3. 지역선도농가 멘토링, 컨설팅 지원
 - 4. 브랜드 개발,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
 - 5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
 - 6. 현장 실습 지원사업
 - 7.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·가공·판매 지원사업
 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지원의 신청 및 선정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 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관리·감독 및 지원제한 등)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
 -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 다만, 천 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
 - 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(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)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4.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 - 5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 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8조(전문 인력 육성)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·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, 컨설팅 등

- 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9조(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를 둘 수 있다.
 - 1.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농업기 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해야 한다.
 - 1.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
 - 2.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
 - 3. 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

- 4. 농업·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
- 5.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6.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의 간사)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자치법규안명
 -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재정 수반 요인
 - 제5조(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)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 - 기존에 지원 중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정착과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남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